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89

발의연월일: 2024. 6. 26.

발 의 자:김용민·민형배·박균택

주철현 · 정진욱 · 양부남

임미애·한준호·문정복

김용만 • 전진숙 • 조인철

모경종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대법원, 대검찰청을 비롯해 법원이나 검찰의 주요 사법기관은 현재 서울시에 집중되어있음. 서울의 과밀화 해소하고, 국토 균형발전을 도 모하고자 많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바, 이에 발맞춰 사 법기관도 지방으로 분산이전하는 것이 타당함.

헌법상 중립을 지키는 것이 강하게 필요한 주요 국가기관의 경우 정치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물리적·심리적 거리를 두어야하며, 사법 선 진국인 독일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경우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전국에 분산되어 사법 권력과 정치 권력의 거리를 분리함으로서 실질 적 권력분립을 이루고자 하고 있음.

또한 대구의 경우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고, 4·19혁명을 시작했던 역사적 의의가 깊은 도시이므로 그 역사성을 보존하고 대법 원이 소재하기에 충분한 의의를 지닌 지역인바, 대법원이 소재하기에 적절한 도시임. 이에 대법원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하도록 함(안 제12조).

법률 제 호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 중 "서울특별시에"를 "대구광역시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| 행 | | 개 | 정 | 안 | |
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|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---|
| 제12조(소재지) | 대법원은 | 서울특 | 제12조(소재지) | - | | <u>-대구광</u> |
| <u>별시에</u> 둔다. | | | <u>역시에</u> | | | |